

# 食 品 衛 生 法

(1962. 1. 20公布)  
(法律第 1007號)

## 第1章 總 則

- 條 1 第 (目的)** 本法은食品으로因한衛生上의危害의防 止와食品營養의質的向上을圖謀함으로써國民保健의向上과增進에寄與함을目的으로한다
- 第 2 條 (定義)**
- ① 本法에서食品이라함은모든飲食物을말한다 但醫藥으로서取扱하는것은例外로한다
  - ② 本法에서添加物이라함은食品의製造,加工 또는保存을함에있어食品에添加,混合,浸潤其他의方法에依하여使用되는物質을말한다
  - ③ 本法에서化學의合成品이라함은化學의手段에依하여元素 또는化合物에分解反應以外의化學反應을일으켜얻은物質을말한다
  - ④ 本法에서器具라함은飲食器其他食品 또는添加物의採取,製造,加工,調理,貯藏,運搬,陳列,授受 또는攝取에使用되는것으로서食品 또는添加物에直接接觸되는機械器具를말한다
  - ⑤ 本法에서容器,包裝이라함은食品 또는添加物을넣거나나는物品으로서食品 또는添加物을授受할때함께引導되는物品을말한다
  - ⑥ 本法에서標示라함은食品,添加物,器具 또는容器包裝에明示된文字 또는圖形을말한다
  - ⑦ 本法에서食品衛生이라함은Food,添加物,器具 및容器와包裝을對象으로하는飲食에關한衛生을말한다
  - ⑧ 本法에서營業이라함은Food 또는添加物을採取,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 또는販賣하는業을말한다
  - ⑨ 本法에서調理士라함은調理士免許를받아Food을調製하는것을業으로하는者를말한다
  - ⑩ 本法에서營養士라함은營養士免許를받아營養의指導를하는것을業으로하는者를말한다
  - ⑪ 本法에서集團給食所라함은營利를目的으로하지 아니하고繼續의으로多數人에게飲食을供給하는寄宿舍,學校,病院,其他厚生機關等의給食施設을말한다

## 第2章 食品 및 添加物

- 第 3 條 (販賣禁止)**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食品 또는

添加物은販賣(販賣以外의授與도包含한다)以下같다)  
使하거나販賣할目的으로採取,製造,輸入,加工,用,調理 또는貯藏하거나陳列하지 못한다

1. 腐敗 또는變質되었거나未熟한것 但一般的으로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없고食用으로서無妨하다고認定되는것은例外로한다
2. 有毒 또는有害物質이含有되있거나附着한것 但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없다고保健社會部長官이認定하는것은例外로한다
3. 病原微生物에依하여污染되었거나 또는그의念慮가있어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것
4. 不潔하거나異物의混入 또는添加 其他의事由로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것

- 第 4 條 (病肉等의販賣禁止)** 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疾病에걸렸거나그의念慮가있거나또는病死한獸畜(牛馬, 緬羊, 山羊, 豚 其他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動物을말한다)의 肉, 骨, 乳汁, 臟器 또는血液을Food으로서販賣하거나販賣할目的으로採取輸入,加工使用,調理 또는貯藏하거나陳列하지 못한다

- 第 5 條 (化學의合成品의販賣禁止)** 闔令으로定한化學의合成品以外의化學의合成品과이를contains한製劑를Food의添加物로使用하거나이를contains한Food을販賣하거나販賣의目的으로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 또는貯藏하거나陳列하지 못한다

- 第 6 條 (基準과規格)**
- ① 保健社會部長官은國民保健上特히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保健社會部令으로서販賣를目的으로하는Food 또는添加物의製造,加工,使用,調理 및保存의方法에關하여必要한基準과그Food 또는添加物의成分에關하여必要한規格을定할수있다
  - ② 前項의規定에 하이여基準과規格이定하여졌을때에는Food 또는添加物은그基準에 맞는method에依하여製造,加工,使用,調理 또는保存되어야하며그基準과規格에 맞지아니하는Food 또는添加物은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 또는保存하거나販賣하지 못한다

## 第3章 器具와容器, 包裝

- 第 7 條 (有毒器具等의販賣, 使用禁止)** 有毒 또는有害

物質이含有되거나附着되어人體의健康을害할憂慮가있는器具와容器, 包裝과食品또는添加物에接觸됨으로써人體의health을害할憂慮가있는器具, 容器및包裝을販賣하거나販賣의目的으로製造, 輸入하거나또는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 第8條 (基準과規格)** ① 保健社會部長官은國民保健上特히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保健社會部令으로서販賣를目的으로하거나營業上使用하는器具와容器, 包裝과原材料에關한規格과製造方法에關하여必要한基準을定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基準과規格이定하여졌을때에는器具와容器包裝은그基準에맞는方法에依하여製造하여야하며 그基準과規格에맞지않는器具와容器, 包裝은製造, 輸入또는販賣하거나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 第4章 標 示

- 第9條 (標示基準)** ① 保健社會部長官은國民保健上特히necessary하다고認定할때에는保健社會部令으로販賣를目的으로하는食品 또는添加物과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規格또는基準이定하여진器具와容器, 包裝의標示에關하여必要한基準을定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標示에關한基準이定하여진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은그基準에맞는標示가없으면 이를販賣하거나販賣의目的으로陳列하거나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 第10條 (虛偽標示禁止)** 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에關하여國民保健에危害를끼칠憂慮가있는虛偽標示其他의標示를하지못한다

#### 第5章 食品添加物公典

- 第11條 (食品添加物公典作成)** 保健社會部長官은食品添加物公典을作成하여第6條第1項의規定에依한基準과規格이定하여진添加物과第9條第1項의規定에依한基準이定하여진添加物에關하여當該基準과規格을收錄하여야한다

#### 第6章 檢 查

- 第12條 (製品検査)** ①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특별市長, 道知事은國民保健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販賣를目的으로하는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의製品에關하여検査를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製品検査를할수있는食品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의種類와製品検査의方法, 節次, 手數料其他検査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 第13條 (製品検査의標示)**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製品検査를하였을때에는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그製品検査에合格한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에그뜻을標示하여야한다

- 第14條 (無標示品의販賣禁止)** 第12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製品検査를받아야할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包裝은그製品検査에合格한뜻의標示가없으면 이를販賣하거나賣販할目的으로陳列하거나營業上使用하지못한다

- 第15條 (輸入)** 販賣를目的으로하거나營業上使用에있어衛生上危害롭다고認定되는食品또는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을輸入하고자하는者는保健社會部長官의承認을받은後貿易法에依한所定의節次를取하여야한다

- 第16條 (臨檢, 收去等)** ①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本法의實施를爲하여不得已하다고認定할때에는營業을하는者(以下營業者라한다) 또는其他關係人에對하여必要한報告를하게하거나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營業의場所, 事務所倉庫其他의場所에臨檢하여販賣를目的으로하거나營業上使用하는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營業의施設其他의物件을検査하게 할수있으며實驗上必要한程度의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을收去하게 할수있다 但必要에따라營業關係의帳簿나書類를閱覽하게 할수있다  
 ② 前項의境遇에關係公務員은臨檢検査또는收去할수있는權限을表示하는證票를攜帶하여야하며關係人에게 이를提示하여야한다

- 第17條 (食品衛生検査機關의指定)** ① 保健社會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第12條第1項의規定에依한製品検査와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收去한食品, 添加物,器具와容器, 包裝의實驗에關한事務를行하게하기爲하여必要한公共機關中에서食品衛生検査機關을指定할수있다

-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食品衛生検査機關으로指定된機關은正當한事由없이 이를拒絕하지못한다

- 第18條 (食品衛生監視員)** ① 第16條第1項의規定에依한關係公務員의職務를行하게하기爲하여保健社

會部와서 을特別市, 道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 ③ 食品衛生監視員은 本法違反者에 對하여 告發할義務가 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任命, 職務와 其他必要한 사항은 開令으로 한다

## 第7章 營業

- 第19條 (食品衛生管理人)** ① 乳製品化學의 合成品인 添加物其他閣令으로 定하는 食品 및 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營業者는 그 製造 또는 加工을衛生的으로 管理하게 하기 爲하여 그 施設마다 專任의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但 營業者自身이 食品衛生管理人이 되어 直接 management하는 施設에 對하여例外로 한다
- ② 食品衛生管理人은 當該施設에 있어서 그 management에 屬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에 關하여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違反되지 아니하도록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 또는 加工에 從事하는者를 監督하여 야한다
- ③ 食品衛生管理人의 資格 및 其他必要한 사항은 開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遊興營業從事者の 登錄等)** ① 飲食店營業中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業種 (以下 遊興營業이라 한다)을 除外하고는 食品의 加工調理等勞役以外에 遊興에 從事하는者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遊興營業에 從事코자하는者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에 登錄하여 야하며 遊興營業者는 登錄되지 아니한者를營業에 從事시킬 수 없다
-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對象者的範圍登錄의申請登錄證의交付登錄의取消와 遊興營業者 및 本條에 依하여 登錄된從事者の遵守事項其他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 第21條 (健康診斷)** ① 食品 및 添加物을 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 또는 販賣하는 營業에 從事하는者는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健康診斷을 받은結果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虧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者는 그營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 ③ 營業者는 前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者나 健康診斷의 結果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虧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者를 그營業에 從事시키지 못한다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의 實施方法 및 營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疾病의 種類와 其他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 第22條 (施設基準)** 飲食店營業其他閣令의 定하는 營業에 對하여는 保健社會部令으로 業種別施設基準을 定한다

- 第23條 (營業許可)**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者는 門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營業場所 또는 施設을 變更할 때에 도 또한 같다

-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할 때에는 必要한條件를 附할 수 있다

- 第24條 (廢棄處分等)**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第3條乃至第5條, 第6條第2項第7條, 第8條第2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違反하였을 때에는 營業者 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을 廢棄하게 하거나 其他營業者에 對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去除하기 爲하여 必要한措置를 할 것을 命하고 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一部를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停止시킬 수 있다

- 第25條 (營業許可等의 取消)**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第9條第2項, 第14條, 第19條第1項, 第20條의 각項, 第21條第8項 또는 第27條의 規定 또는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條件에違反하였을 때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一部를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停止시킬 수 있다

- 第26條 (施設의 改修命令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그 營業의 施設에 關하여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施設基準에違反하였을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營業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施設의 改修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營業許可를取消할 수 있다

## 第8章 調理士와營養士

- 第27條 (調理士)** 門令의 定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 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但 飲食店의 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經營者自身이 調理士가 되어 直接 飲食을 調製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 對하여는例外로 한다

- 第28條 (營養士)** 門令의 定하는 集團給食所에 는 营養士를 두어야 한다. 但 集團給食所의 經營者自身이 营養士가 되어 直接營養의 指導에 從事하는 集團給食所에 있어서는例外로 한다

- 第29條 (調理士免許)** 調理士가 되고자하는者는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로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保健社會部長官이指定하는學校 또는養成機關을修了한者
2. 調理士資格試驗에合格한者
3. 外國에서調理士免許를 받은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適當하다고認定하는者

**第30條 (營養士의 免許)**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者は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保健社會部長官이指定하는 school 또는養成機關을修了한者
2. 營養士資格試驗에合格한者
3. 外國에서營養士免許를 받은者로서保健社會部長官이適當하다고認定하는者

**第31條 (缺格事由)**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者는 調理士 또는營養士가 될 수 없다

1. 精神病患者 또는心身耗弱者
2. 傳染病患者
3. 麻藥其他有毒性物質에 中毒된者
4. 素行이極히不良한者로서調理士 또는營養士로서不適當하다고認定되는者

**第32條 (免許取消)**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道知事은營養士 또는調理士가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免許를取消한다

1. 前條各號의 1에該當하게 되었을 때
2. 調理士가 그調理業務에 있어서 食中毒其他衛生上重大한事故를發生하게 되었을 때

**第33條 (名稱使用의 禁止)** 調理士 또는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營養士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4條 (委任事項)** 調理士 및營養士의 資格試驗, 免許手數料, school 및養成機關의指定其他必要한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定한다

## 第9章 食品衛生審議委員會

**第35條 (食品衛生審議委員會)** 保健社會部長官의 請問에 依하여 다음各號의 事項을 調查審議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 (以下委員會라한다)를 둔다

1. 食中毒防止에關한事項
2. 食品添加物公典作成에關한事項
3. 食品及添加物의 基準과規格의 制定에關한事項
4. 食品衛生斗玩弄品衛生에關한事項
5. 其他重要한事項

**第36條 (委任事項)** 委員會의組織과運營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 第10章 雜 則

**第37條 (國庫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每年度豫算의範圍내에서 다음各號의 經費의全部 또는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16條第1項(第4 0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 依한收去에 要하는 經費
2. 第17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 依한食品衛生檢查機關에서의 檢查와 實驗에 要하는 經費
3. 第18條第1項의規定에 依한食品衛生監視에 要하는 經費
4. 第21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 依한健康斷診實施에 要하는 經費
5. 第24條 (第40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 依한廢棄에 要하는 經費
6. 第49條 (第40條第1項에서 準用하는境遇를包含한다)의規定에 依한死體의 解剖에 要하는 經費

**第38條 (食中毒에 關한調查報告)** ① 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에 起因하여 中毒을 일으킨患者 또는 그疑心이 있는者를 診斷하였거나 그死體를 檢案한 醫師는 遲滯없이 管轄保健所長 또는 그支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保健所와 그支所가 없는境遇에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市, 邑, 面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保健所長, 그支所長 또는 서울特別市長, 市, 邑, 面長은 前項의規定에 依한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閣令의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그眞狀을 調査하고 市, 邑, 面長은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이境遇에 支所長은 保健所長을, 邑, 面長은 郡守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 ③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은 前項의規定에 依한調查를 하였거나 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閣令의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9條 (死體解剖)**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은 食品, 添加物, 器具와容器, 包裝에 起因한疾病 또는 그에 起因하였다고 疑心되는 disease으로 死亡한者的死體를 그遺族의同意를 얻어 解剖할 수 있다

- ② 前項의境遇에 있어서死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서는 그原因을 判明할 수 없고 그로 因하여 國民保健에 重

大한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유족에게 통지를 한 후에 사체를 해剖할 수 있다

③ 前 2 항의 규정은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한 强制處分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④ 第 1 항 또는 第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해剖하는 특별례식을 지켜야 한다

**第40條** (玩弄品 및集團給食所에 의準用規定) ① 乳幼兒가接觸함으로써 그健康에 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玩弄品으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關하여는 第 3 條 第 5 條乃至第 10 條, 第 12 條乃至第 17 條, 第 19 條乃至第 26 條, 第 38 條 및 前條의 规定을 準用한다  
 ② 集團給食所에 對하여는 第 7 條乃至第 9 條, 第 14 條 第 16 條, 第 17 條, 第 21 條, 第 22 條, 第 24 條乃至第 26 條의 规定을 準用한다

**第41條** (施行令)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閣令으로 定한다

## 第11章 罰 則

**第42條** (罰則) 食品衛生監視員이 本法에違反된事實을 故意로 默過하였을 때에는 3년以下の懲役 또는 5년以下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43條** (同前) ① 第 3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第 4 條 또는 第 5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의 规定에違反한者は 3년以下の懲役 또는 50만 圈以下の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境遇에 懲役과 罰金은 이를併科할 수 있다

**第44條** (同前) ① 第 6 條 第 2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第 7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第 15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 23 條 第 1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이 规定에違反한자는 1년以下の懲役 또는 20만 圈以下の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境遇에 懲役과 罰金은 이를併科할 수 있다

**第45條** (同前)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は 6月以下の懲役 또는 10만 圈以下の罰金에 處한다

1. 第 8 條 第 2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第 9 條 第 2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第 10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第 14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 38 條 第 1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의 规定에違反한者
2. 第 22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施設基準 또는 第 23 條 第 2 條 (第 40 條 第 1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의 规定에 依한 条件에違反한者

3. 第 24 條乃至第 26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각각 包含한다)의 规定에 依한 处分 또는 命令에违反한者

4. 第 27 條 또는 第 28 條의 规定에違反한者

**第46條** (同前) ①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は 10만 圈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6 條 第 1 條 (第 40 條에서 準用하는境遇를 包含한다)의 规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臨檢, 檢查 또는 收去를 拒否하거나妨害 또는 忌避한者

2. 第 33 條의 规定에違反한者

3. 本法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者

**第4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個人의 代理人, 使用人其他從業員이 그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 43 條乃至前條의違反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行為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個人에 對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附 則〕

①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90日을 經過한 後에 施行한다

② 다음各號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1. 西紀1900年法律第15號飲食物其他物品取締規則에 關한件
2. 西紀1911年總令第133號衛生上有害飲食物 및 有害物品取締規則
3. 西紀1912年總令第121號에 칠 알콜(木精)取締規則
4. 西紀1611年總令第134號清涼飲料水 및 氷雪營業取締規則
5. 西紀1916年警令第2號料理屋, 飲食店營業取締規則
6. 西紀1945年軍政法令第23號酒精飲料의 販賣禁止
7. 西紀1946年軍政法令第83號公設浴場 및 飲食店의 免許中本法에 抵觸되는條項
8. 西紀1940年總令第114號朝鮮牛乳營業取締規則
9. 西紀1916年警令第3號藝妓耐婦, 藝妓置屋取締規則
- ③ 本法施行當時從前의 法令이 依하여 받은營業許可는 本法에 依하여 받은許可로 본다. 但本法에 依한 施設基準에適合하지 아니하는 施設은 本法施行日로부터 1年以内에 本法에 依한 施設基準에適合하도록 그 施設을 改修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營業許可를取消한다